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3175회

(5등급, 낮은위험)

정부가 본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본 문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률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 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메리츠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3년 04월 12일 NICE신용평가, 2023년 04월 14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확인한 후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투자금은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18. 9.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3호, 2018. 9. 7., 일부개정]을 준수하여 운용되며, 동 규정의 제3장 제8조의2 제2항 제다목에 따라 **발행인의 파생결합증권과 계정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춘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파생결합사채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 2018. 9.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8-23호, 2018. 9. 7., 일부개정]을 준수하며, 동 규정의 제3장 제8조의2 제2항 제나목에 따라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 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 제공

11.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home.imeritz.com>) 또는 고객센터(1588-3400)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

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5등급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및 투자자유형 분류기준>

투자위험도 / 상품유형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Speculative Risk)	2등급 높은 위험 (High Risk)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Relatively High Risk)	4등급 보통 위험 (Intermediate Risk)	5등급 낮은 위험 (Low Risk)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tra Low Risk)
ELB, DLB				외화표시 원금지급형	원금 지급형	
투자자유형	고수익지향형	성장지향형		중립형	안정 지향형	이자소득형

## 1. 상품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메리츠증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3175회 <b>(5등급, 낮은위험)</b>	
기초자산의 종류	삼성전자 보통주	
모 집 총 액	7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7,0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1월 19일
	청약종료일	2024년 01월 19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00원으로 하며, 10,000원 이상인 경우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1월 19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1월 19일	
발 행 일	2024년 01월 19일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항 목	내 용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만기일	2027년 01월 19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b>고난도금융 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b>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b>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b> 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b>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금액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10,000 원 단위 미만 절사). 단, 총 청약금액이 총 5억 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은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24년 01월 08일 기준 10,000원 당 [9,940.98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2024년 01월 08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삼성전자 보통주 : 22.56%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 발행 이후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가액(기준가)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권리의 내용

### (1) 기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 상환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만기상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
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잔존액면금액× [ 1+ (4.051% × 1,096 ÷ 365) ] (연 4.051%)
②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잔존액면금액× [ 1+ (4.050% × 1,096 ÷ 365) ] (연 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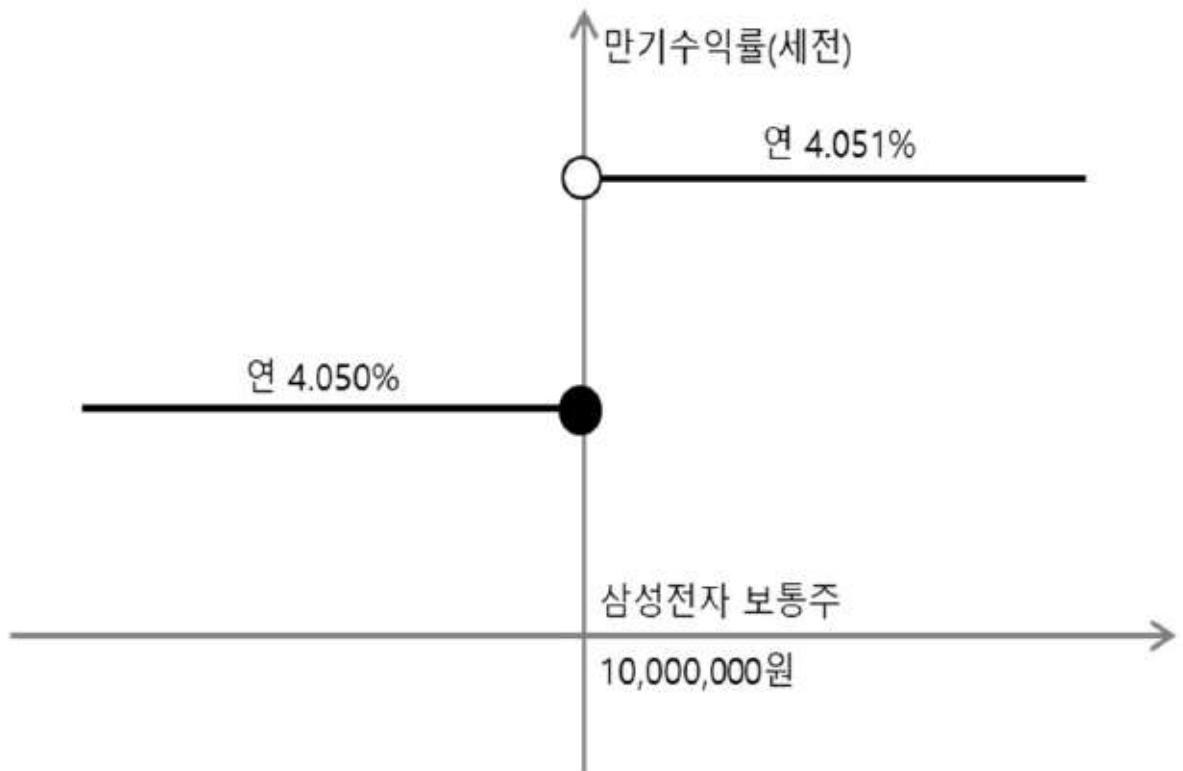
※ 세전 기준, 원 단위 미만 절사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의 종가
- 만기평가일 : 2027년 01월 14일

#### 나. 기타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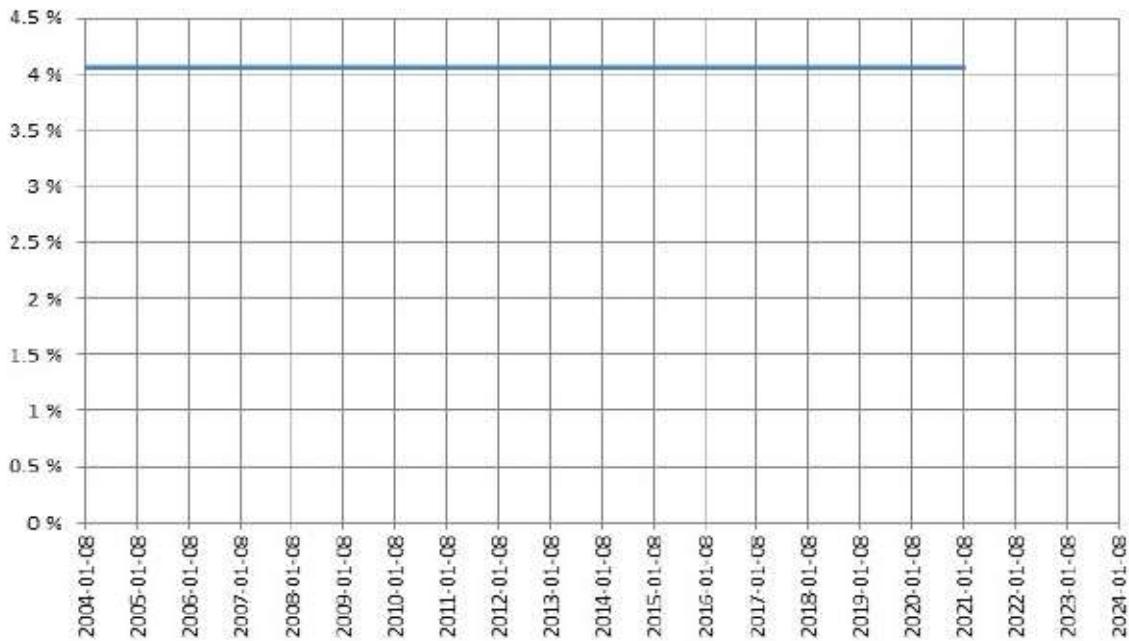
- 만기평가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소영업일의 기초자산의 종가를 만기평가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 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환일,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이 상환일,지급일이 되며,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환금액 계산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3175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 4.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제3175회 (수익률 모의실험)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만기상환1	연 4.051%	0	0.000%
만기상환2	연 4.05%	4,206	85.090%
진행중		737	14.910%
Total		4,943	100.000%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4년 01월 08일부터 2024년 01월 08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4년 01월 08일)로부터 분석기간 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 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4,943회)

주3)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5. 중도상환에 대한 사항

○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리츠증권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항 목	내 용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발행일(불포함) 1영업일 이후부터 만기일(불포함) 4영업일 이전 까지의 기간중에 중도상환 요청불가일을 제외한 매 영업일
중도상환금액 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후 [1]거래소영업일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가격결정일(불포함)으로부터 [2]영업일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 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 신청일이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 만기일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신청금액과 $[중도상환신청금액 \times 1.050\% \times 경과일수 \div 365]$ 로 계산된 수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경과일수는 발행일(포함)부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불포함)까지 기간의 일수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사유 등의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신청금액과 $[중도상환신청금액 \times 연 4.050\% \times 경과일수 \div 365]$ 로 계산된 수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퇴직연금 제도전환 4.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우 5. 퇴직연금 가입 법인의 합병/영업양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퇴직연금 가입법인의 파산 및 폐업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8.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임 및 계약위반의 경우

항 목	내 용
<b>투자자 유의사항</b>	<p>-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p>

※ 세전 기준, 원 단위 미만 절사

## 6. 투자자 유의사항

<b>파생상품적 성격에 따른 위험</b>	<p>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u>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u></p> <p><u>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지는 경우, 기초자산 거래소 소재지의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등</u>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상환금액,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원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금액으로 청산되거나 그 청산·지급이 지연·유예될 수 있습니다.</p>
<b>발행인의 신용과 관련한 위험</b>	<p>본 증권은 <u>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u>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증권 관련하여 <u>메리츠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u></p>
	<p><u>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u>이므로 증권보유자는 장외매매를</p>

<b>환금성 제약의 위험</b>	통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등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인의 권리 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u>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 다른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u>
<b>과세 관련 위험</b>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u>액면금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u>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과생결합사채(주가연계과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b>권리내용의 변경 및 조기종결 위험</b>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u>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u>
<b>발행회사 등 투자위험</b>	본 상품은 메리츠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으로써 발행회사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이 사유에 해당될 경우 <u>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 종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u>

## 7.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8. 자금의 사용목적

메리츠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9.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목적

메리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매매업, 투자증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 10.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메리츠증권 제52기 3분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 기타 사항

※ 메리츠증권은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메리츠증권 컨택센터(1588-34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home.imeritz.com>)**에 문의할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메리츠증권 지점 (은)는 위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권리와 관련하여 고객 님께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  
다. 또한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

다

( 홈페이지 <http://home.imeritz.com>)

- 년 월 일

설명직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 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사본 등 열람장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증권신고서는 2024년 01월 10일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